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의 명칭이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11. ~ 12.) 예정

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

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34조”를 “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 제34조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 제26조”를 “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 제26조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중 “주민등록번호:”를 “생년월일: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34조에 따라 검찰청이 사용하는 관인(官印)에 대한 규격 및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 제34조----- ----- ----- ----- --.
제9조(준용규정)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관인의 재료, 직인의 사용, 관인의 내용 등 관인 관리에 관하여는 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	제9조(준용규정) ----- ----- ----- -----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 제26조----- -----.